

定

款

社團
法人 韓國輸出產業公團

31

32

36
=1 31

社團 韓國輸出產業公團 定款

第一章 總 則

第一條 (名稱) 本法人은 社團法人 韓國輸出產業公團 (以下 公團이라 한다) 이라 한다

第二條 (住所) 公團은 主事務所를 서울特別市에 두고 必要한 處에 支所를 둘수있다

第三條 (目的) 公團은 輸出產業에 使用되는 工業園地를 造成運營하며 輸出 產業의 發展과 國際收支의 向上에 寄與하는 事業을 營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四條 (公告) 公團의 公告는 서울에서 發行하는 日刊新聞에 한다

第五條 (規約) 本定款에 定한 以外의 必要한 事項은 規約으로 定한다

第二章 事業

第六條(事業) 公團은 第三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輸出産業에 使用되는 工業團地의 造成과 運營
2. 輸出産業의 工業團地에의 誘致
3. 海外僑胞企業의 工業團地에의 誘致定着
4. 工業團地內의 共同시설施設 設置運營
5. 工業團地入住企業체에 對한 融資斡旋
6. 海外市場開拓을 爲한 調査
7. 前各號事業의 遂行에 必要한 附帶事業

第三章 會員과 出資

第七條 (會員) 公團은 出資會員과 非出資會員으로서 構成한다. 그러나 非出資會員의 數는 出資會員의 數의 三分의一을 超過할 수 없다.

第八條 (出資會員) 出資會員은 公團의 事業趣旨에 贊同하는 者로서 出資會員이 되고자 加入을 申請하는 者와 入任企業체로 한다.

第九條 (非出資會員) 非出資會員은 學識經驗이 豊富한 者로서 理事會에서 推薦한 者로 한다.

第十條 (會員資格의 取得) 會員資格은 第八條의 規定에 依한 申請 또는 入任企業체 資格取得과 第九條의 規定에 依한 推薦이 있는 때에 取得한다.

第十一條 (出資義務) ① 出資會員은 壹座以上の 出資座數를 拂反하여야 한다.
② 壹座의 金額은 壹拾萬원으로 하고 記名式出資證書를 發行할 수 있다.
③ 出資會員이 된 者는 遲滯없이 出資座數를 引受하고 理事會에서 決定한 바에 依하여 引受出資金을 納入하여야 한다.

④ 出資會員의 責任은 그가 引受한 出資金을 限度로한다

第十二條 (現物出資) ① 前項의 規定에 依한 出資는 現物出資로서 할수있다

② 現物出資를 하는 者는 出資의 目的인 財産을 引渡하고 登記, 登錄, 其他權利의 設定 또는 移轉을 要할 때에는 이에 必要한 書類를 完備 하여 公團에 提出하여야한다

③ 現物出資의 財産評價金額 및 이에 對하여 附與할 座數는 理事會에서 決定한다

第十三條 (會員資格의 取消) 會員으로서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會員의 資格을 取消한다

1. 除 名

2. 入任資格의 取消

3. 任意脫退

第十四條 (持分の 歸屬) 會員의 死亡, 除名, 任意脫退 또는 法人會員의 解

散이 있을 때에는 그會員의 持分은 公團에 歸屬한다

第十五條 (除名) 會員으로서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理事會의 決議를 以어 除名할수 있다

1. 出資金의 納入을 怠慢히 한者

2. 公團의 名譽를 毀損하거나 事業을 阻害한 者

第四章 總會

第十六條 (總會)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의 二種으로 하고 法規의 定하는 바에 따라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理事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十七條 (定期總會) 定期總會는 每事業年度經過後 二月內에 召集한다

第十八條 (臨時總會) ①臨時總會는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境遇에 召集한다

集한다

1.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2. 會員이 在籍會員 四分의 一以上の 同意를 以어 會議의 目的事項과

召集理由를 記載한 書面으로 召集을 要請할 때

② 前項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理事長은 二週內에 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十九條 (總會의 召集節次) 總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各會員에게 七日

前에 會議의 目的事項, 日時 및 場所를 記載하여 通知하여야 한다

第二十條 (總會의 議決事項) 다음에 揭記한 事項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定款의 變更
2. 豫算의 議決과 決算의 承認
3. 事業計劃 및 事業報告의 承認
4. 理事 및 監事의 選任
5. 公團의 解散 또는 合併
6. 起債 및 借入金의 限度의 決定

7. 增 資

8. 其他 理事長이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二十一條 (總會의 議決) ① 總會의 議決은 在籍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

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서 한다 그러나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權을 가진다

② 理事長은 總會의 議長이 되고 理事長에 事故가 있을 때에는 第二十七

條의 規定에 依하여 定한 順位로 常任理事가 그職務를 代行한다

③ 總會의 議決은 第十九條의 規定에 依하여 미리 通知한 事項에 限하

여 議決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第二十二條 (議事錄의 作成) 總會의 議事에 對하여서는 그經過의 要領 및

結果를 議事錄에 記載하고 議長 監事와 出席한 理事二人以上이 이에

署名捺印하여 公團에 備置한다

第五章 任員 및 理事會

第二十三條 (理事 및 監事의 選任과 數) 公團에 十人以上의 理事와 二人의 監事를 두되 總會에서 各々 選任한다

第二十四條 (理事 및 監事의 任期) ① 理事의 任期는 貳年, 監事의 任期는 壹年으로 한다 그러나 重任될수 있다

② 補缺就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二十五條 (任員의 選任) 公團에 任員으로서 理事長一人 常任理事 若干人을 두되 理事會에서 各々 選任하고 理事長은 商工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二十六條 (任員의 資格) 公團의 任員은 會員이 아닌者中에서도 選任할수 있다

第二十七條 (任員의 職務) ① 理事長은 公團의 業務를 統轄하며 理事長만이 公團을 代表한다

② 常任理事는 理事長을 補佐하여 各 一職務를 分掌하며 理事長이 事故



가 있을 때에는 理事會에서 定한 順位에 따라 理事長의 職務를 代理한다

第二十八條 (理事會) ① 理事會는 理事로써 構成하며 理事長이 이를 召集한다

② 理事長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③ 理事會의 議決은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

으로서 한다 그러나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權을 가진다

④ 監事 및 顧問은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⑤ 理事會의 召集은 會議日의 三日前까지 日時 및 場所를 各理事에게 通

知하여야 한다 그러나 緊急을 要할 때에는 告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理事는 理事會를 召集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

半數의 同意를 얻어 理事長에 對하여 理事會의 召集을 要請할 수 있다

⑦ 理事長은 前項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二十九條 (理事會의 議決事項) ① 理事會는 다음事項을 議決한다

1. 諸規定의 制定 變更 및 改廢

2. 工業團地審議委員會 審議案件

3. 起債에 關한 事項

4. 會員의 除名

5. 總會에 附議할 事項

6. 總會의 委任 事項

7. 重要財産의 取得과 處分

8. 其他 公園運營上 重要한 事項

② 理事會는 前項 各號의 事項中 輕微한 事項은 이를 理事長에게 그 處理를 委任할 수 있다

第三十條 (理事會의 書面決議) 理事會의 決議가 緊急을 要할 때에는 理事會를 召集하지 아니하고 書面으로 決議할 수 있다

第三十一條 (理事會의 議事錄) 理事會의 議事に 關하여는 그 經過의 要領과 結果를 記載한 議事錄을 作成하고 議長과 出席한 理事二人以上이 署名

捺印하여 公團에 備置한다

第三十二條 (諮問委員會) 公團에 理事長의 諮問機關으로 必要한 諮問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三十三條 (顧問) ① 公團에 顧問을 둘 수 있다

② 顧問은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中에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委囑한다

第三十四條 (職員) 公團은 規約의 定하는바에 따라 職制를 編成하고 이에 必要한 職員을 둘 수 있다

第六章 入住企業체와의 契約

第三十五條 (入住契約의 締結) 入住企業체는 指定日로부터 二月內에 公團과 入住契約를 締結하여야 한다

第三十六條 (入住契約의 解約) 入住企業체가 入住資格을 取消당한 때에는 公團과의 入住契約은 解約되며 公團은 當該 入住企業체에 對하여 解約

通知를 하여야 한다

第三十七條 (入住契約規程) 公團은 入住企業체와의 契約를 爲하여 入住契約

規程을 作成한다

第三十八條 (空地의 賣渡 및 賃貸) 公團은 開發完成한 團地內의 空지를 入

住企業체에 賣渡 또는 賃貸할 수 있다

第三十九條 (使用料等의 徵收) 公團은 共同施設의 設置 運營 및 補修에 必

要한 限度內에서 入住企業체로 부터 使用料 賃貸料 및 負擔金을 徵收한다

第七章 會計

第四十條 (收入) 公團의 通幣收入은 會員의 出資金 空地의 賣渡金 또는

賃貸料 共同施設의 使用料 및 負擔金 其他 贊助金과 附帶事業의 諸收入

으로 한다

第四十一條 (會計年度) 公團의 會計年度는 每年一月一日부터 十二月三十一日

로 한다

43

第四十二條 (財務諸表의承認) 理事長은 每年度末의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事業報告書 收支決算書 過不足金處分案을 作成하여 監事의 監査를 거친後 定期總會에 提出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한다

第八章 解散

第四十三條 (解散事由) 公團은 다음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主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解散한다

1. 總會에서 解散決議를 하였을 때
2. 合併으로 因하여 消滅하였을 때
3. 公團이 破産하였을 때
4. 主務部長官의 解散命令이 있을 때
5. 定款에 定한 存立期間이 滿了하였을 때

第四十四條 (存立期間) 公團의 存立期間은 設立日로부터 貳拾年으로 한다

第四十五條 (清算) 公團이 解散할 때에는 公團의 債務를 完済하고 残余財

産이 있을 때에는 出資會員에 對하여 出資持分の 比例로 分配한다

附 則

第四十大條 本定款 및 規約에 規定이 없는 事項은 民法中 法人에 關한 規定과 其他法令에 依한다

第四十七條 公團은 株式會社韓國輸出産業公團의 株主에 對하여 讒解入株金에 該當하는 公團의 座數를 附與하고 其財産을 引受하며 清算決算의 損失

金은 公團의 創業費로 計上하고 其株主는 公團의 設立發起人이 된다

第四十八條 設立發起人은 遲滯없이 設立總會를 召集하여 定款을 作成하고 理事와 監事를 選任하여야 한다

第四十九條 本定款은 主務部長官의 設立認可日(西紀一九六四年九月十日)로

부터 發效한다